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085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김정호·허종식·최기상

박 정 • 윤후덕 • 임미애

이연희 • 이수진 • 정성호

신영대 · 전재수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그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으로 하되, 연접한 시·도 간 수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영업구역과 해당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영업구역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하위법령에서는 낚시어선업자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 켜 낚시터로 안내하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영업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다른 시·도 관할 수역까지 를 영업구역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업자의 영업에 대한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으로서 법률 근거 없이 하위법령에서 그 예외를 정한 것 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 해당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접한 시·도의 낚시어선업자가 제주시 추자도에 무분별하게 낚시인을 하선시켜 쓰레기 투기, 안전사고 등 문 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낚시어선업의 영업범위에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규정함으로써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영업구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제27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도지사의 관할수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영업구역) ① (생 략)	제27조(영업구역) ① (현행과 같
	<u>수</u>)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은
	낚시어선의 선적항이 속한 시
	・도지사의 관할 수역 또는 공
	동영업구역과 연접한 다른 시
	・도지사의 관할 수역은 포함
	<u>하지 아니한다.</u>
<u>②</u> · <u>③</u> (생 략)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